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50
----------	-----------

제안년월일 : 1999년 4월 22일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호

1. 수정이유

- 시중은행의 금리가 자율화되어 은행별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납부자의 혼선 방지 도모와 이자율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계약서상 납기내에 분양대금을 납입치 못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부터 계약 당시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토록 하는 것을 시금고에 추가 납부토록 함.(안 제20조제2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제2항중 “시중은행”을 “시금고”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u>조성지</u> 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공업용지</u>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한다.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u>분양지</u> ----- ----- ----- ----- --- <u>산업단지</u> ---- ----- ----- -----.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①(개정안과 같음) ② ----- ----- ----- ----- <u>신금고</u> ----- ----- ----- -----.
② <u>신설</u>	②계약서상 납기내에 분양대금을 납입치 못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 부터 당시의 <u>시중은행</u>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입 하여야 한다.	